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26호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1 7 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2
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공 고 제 1 1 7 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
규칙 일부개정(안)
- 공 고 제 1 1 8 5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1
- 공 고 제 1 1 8 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33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공 고 제 1 1 8 9 호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42
공람공고

고 시

- 고 시 제 7 6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43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17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7월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행정조직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을 국가직과 동일 수준으로 현실화 (안 제4조)
-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안 제6조제1호)
-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명문화 (안 제6조제5호)
- 여비 부담 수령 시 부담수령액 환수 및 2배 가산징수 신설 (안 제5조)
- 중앙행정기관 등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기관 명칭 변경 및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안 제6조제3호, 제6조제8호)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184, FAX 453-218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5.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18년 월 일
제 출 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을 국가직과 동일 수준으로 현실화: (안 제4조)
- 국내 출장 비 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안 제6조제1호)
-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명문화: (안 제6조제5호)
- 여비 부담 수령시 부담수령액 환수 및 2배 가산징수 신설 : (안 제5조)

☐ 본 문☐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자료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제16조, 제18조, 별표1, 별표2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6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각 호를 준용한다.

제6조(종전의 제4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8조의2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종전의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용차량관리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관리규칙」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4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제6조제8호(종전의 제4조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여비 부담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u>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u>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u>별표2의 각 호를 준용한다.</u>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 ----- ----- ----- -----.
1.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u>준용하지 아니한다.</u>	1. 제8조의2 제5항은 <u>준용하지 아니한다.</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 <u>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u> ”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 <u>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u> ”는 <u>준용하지 아니한다.</u>
4. -----「 <u>인천광역시 남동구 관용차량관리규칙</u> 」-----.	4. -----「 <u>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관리규칙</u> 」-----.
<신설>	5. <u>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u>
5. · 6. (생략)	6. ·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7. ----- <u>행정안전부장관</u> ----- -----	8. ----- <u>인사혁신처장</u> ----- ----- -----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

8. 별표1 제1호 다목·라목 및 제2호 가목 중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33 제2호 가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2호 나목”으로, “「계약직공무원 규정」 별표1”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별표”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고, 같은 표 제2호 가목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보며,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신 설>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장-----

<삭 제>

9.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신 설>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여비 부담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참고자료]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해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해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 여행자 및 해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해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해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해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삭제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 분	해 당 공 무 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 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한다.

②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신설 2013.6.12.]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6.9.21.>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3.3.><개정 2016.9.21.>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9.2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6.9.21.]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9.21.>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6.9.21.>

[별표 1]<개정 2016.9.21.>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III. 근무지 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2. 여비지급기준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마.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거리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1)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한다.

2) 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한다.

※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출장자는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새금계산서, 신용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17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7월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침」을 준용, 규칙 일부개정으로 직원 정원 충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체계를 정비,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센터 조직의 정원(증 2명) : “6명 이내로”를 “8명 이내로”(안 제8조)
- 조직체계 및 임무[별표2] 일부내용 수정(안 제11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시기 조정(안 16조, 19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노인장애인과)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453-5852,
FAX 453-58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년 7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침」을 준용, 규칙 일부개정
으로 직원 정원 충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체계를 정비,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문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센터 조직의 정원(증 2명) : “6명 이내로”를 “8명 이내로”(안 제8조)
- 조직체계 및 임무[별표2] 일부내용 수정(안 제11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시기 조정(안 16조, 19조)

☐ 본 문

☐ 신 · 구조문 대비표

☐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2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3명 등 6명”을 “5명 등 8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예산”을 “예산안”으로,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로 한다.

제19조 중 “매 회계연도”를 “해당 사업연도”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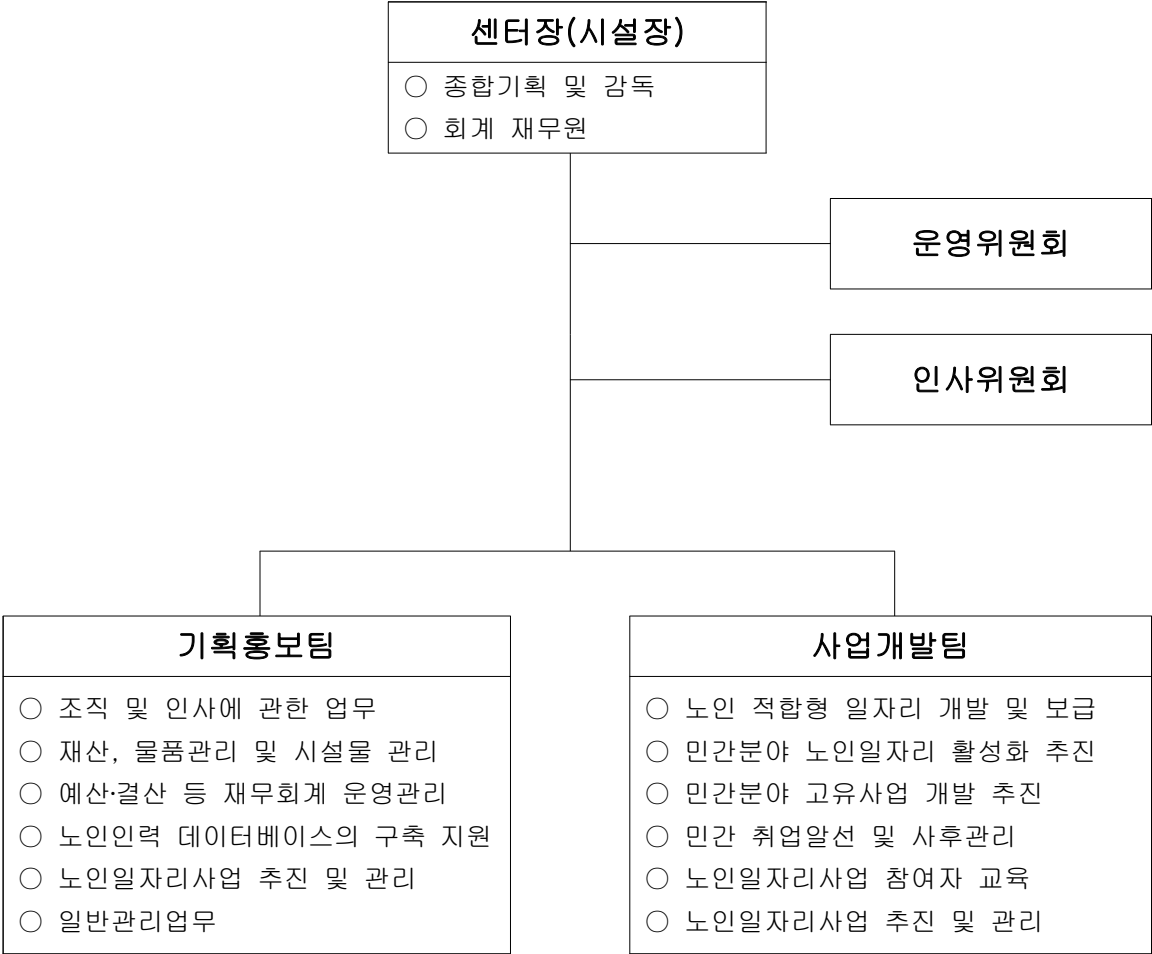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노인인력개발센터 조직체계 및 정원(제11조 관련)



구 분	계	센터장 (시설장)	일 반 직		
			2급 (팀장)	3급 (팀장)	4급 (직원)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직급 및 정원)	8	1	1	1	5

붙임 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직원의 정원)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직원은 센터장, 팀장 2명, 직원 <u>3명 등 6명</u> 이내로 한다.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직원의 정원) ----- ----- <u>5명 등 8명</u> -----.
제16조(보조금 예산의 신청) ① 센터장은 다음연도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u>예산</u> 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u>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u>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 예산의 신청) ① ---- ----- ----- <u>예산안</u> ----- ----- <u>해당 사업연도 개시</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결산) 센터장은 <u>매 회계연도</u>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과 사업실적보고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의 첨부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 ----- <u>해당 사업연도</u> ----- ----- ----- ----- -----.

현행		개정안																													
<별표 2>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조직체계 및 임무 센터장(시설장)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기획홍보팀 ○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 일반관리업무 사업개발팀 ○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활성화 추진 ○ 민간분야 고유사업 개발 추진 ○ 민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table><tr><td>구 분(일반직)</td><td>계</td><td>센터장 (시설장)</td><td>2급 (팀장)</td><td>3급 (팀장)</td><td>4급 (직원)</td></tr><tr><td>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급 및 정원)</td><td>6</td><td>1</td><td>1</td><td>1</td><td>3</td></tr></table>		구 분(일반직)	계	센터장 (시설장)	2급 (팀장)	3급 (팀장)	4급 (직원)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급 및 정원)	6	1	1	1	3	<별표 2>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조직체계 및 임무 ----- ○ ----- ○ ----- ----- ----- ----- ----- ----- ----- ----- ----- ----- ----- <table><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 -----</td><td>8</td><td>-</td><td>-</td><td>-</td><td>5</td></tr></table>						-----	-	---	--	--	--	----- -----	8	-	-	-	5
구 분(일반직)	계	센터장 (시설장)	2급 (팀장)	3급 (팀장)	4급 (직원)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급 및 정원)	6	1	1	1	3																										
-----	-	---	--	--	--																										
----- -----	8	-	-	-	5																										

붙임 3 관계법령 발췌사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직제 및 정원

○ 기본원칙

- 직제 및 정원규정은 본 지침을 참조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 직원의 구분 및 직급

- 사무국장(부장)은 1급으로 하고, 일반직은 2급, 3급, 4급으로 보함
- 기관장은 1급 이하의 직원 채용 자체적인 공개채용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 직급별 정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보조금으로 둘 수 있는 직원 정원은 기관장을 포함하여 아래의 정원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이 있는 경우 인원 및 직급조정 가능함

구 분	계	기관장	1급	2급	3급	4급
시 노인인력개발센터	11	1	1	3	4	2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6	1	1	1	1	2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6	1	1	1	1	2
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10	1	1	2	2	4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9	1	1	2	2	3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9	1	1	2	2	3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9	1	1	2	2	3
계양 시니어클럽	6	1	1	1	1	2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5	1	1	1	1	1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9	1	1	2	2	3

※ 정원 및 직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후 조정

※ 단, 인원 증원 또는 직급의 상향조정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인건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3.15., 2011.5.12.>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관리·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공
3. 법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대한 전자적 지원
4. 법 제33조의7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의 이용·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6.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분석 및 제공
7. 사회복지 관련 대국민 인터넷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③ 전담기구의 장은 제2항의 업무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사업 실적과 예산·결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다음 사업연도 2월 말까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담기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0.3.15.>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 ☐ ☐ ☐ ☐ ☐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185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재 무단전출 수취인불명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7월1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명: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8. 7.11. ~ 7.26.
3. 공고대상: **나7028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차량 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생년월일)	주 소	발송일자(1,2차)		미배달 사유	방치장소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18-00196	**나7028	라세티 1.5D AT	박*호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동 ****호(은행동)	18.5.18.	18.6.14.	기타	앵고개로815번길 22 소래휴먼 시아3단지 주차장(322~323동 사이 하	18.5.15.	서울 폐차사업소	032-442-666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18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7월1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개정이유

- 주민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동 명칭을 동 주민센터와 동 행정복지센터로 병기 하던 것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 (안 제명, 제1조, 제2호, 별표 제명)
 - －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를 “남동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7.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위민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위민행정과

○ 연락처: 전화 453-2232 FAX 453-2189

마.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개정 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주민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동 명칭을 동 “주민센터와 동 행정복지센터”로 병기 하던 것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남동구청 및 행정복지센터”로 개정 (안 제명, 제1조, 제2조, 별표 제명)

☐ 본 문

☐ 신·구조문 대비표

☐ 관련법령 및 발체사항

- 「지방자치법」 제6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를 “남동구청”으로 한다.

제2조 중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를 “남동구청”으로 한다.

별표 중 제목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15조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u>남동구청, 동 주민센터</u>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인천광역시 <u>남동구청, 동 주민센터</u>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별표] <u>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u>	<u>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 ----- ---<u>남동구청</u> ----- ----- -----. 제2조(소재지) ----- <u>남동구청</u> ----- -----. [별표] <u>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u>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189호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08호(2009.04.06.)로 정비구역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남동구고시 제2011-26호(2011.04.22.)로 변경 고시한 간석성락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안) 관계서류를 주민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7월13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가. 공람기간: 2018. 7. 13. ~ 2018. 8. 13(30일이상)

나. 명칭 및 면적

구 역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14번지 일원	20,637.1	

다. 공람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 관계도서 참조

주요변경내용	명 칭	기 정	변 경	비 고
임대주택건설비율	-	17%이상	5%이상	비율감소
토지이용계획변경	공동주택	16,534.0㎡	16,512.3㎡	감소) 21.7㎡
	공원	1,033.0㎡	1,899.0㎡	증가) 866.0㎡
	주차장	206.0㎡	-	폐지
	도로	2,864.1㎡	2,225.8㎡	감소) 638.3㎡
건축물(공동주택) 밀도변경	건폐율	25%이하	25%이하	용적률, 높이증가
	용적률	232%이하	250%이하	
	높이	70m이하	72m이하	

라. 관계도서: 게재 생략

마.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802), 간석1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7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7월1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112번길 174 외 4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112번길 174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9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112 번길	174	2009. 11.16	만월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20m지점 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7.1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자로6번길 91 기초구간에위치하여91을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8-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96- 1	2009. 11.16.	은봉로와 청능대로 가운데 위치하여 각 도 로명의 첫 글자를 조합하여 제명	2018. 07.1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문화로169번길 100 기초구간에위치하여100를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1-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0번길	15- 9	2012. 03.28	서창남순환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m지 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7.1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독곡로45 기초구간에위치하여45를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2014. 06.02	인천 남동구 서창동과 경기 시흥시 방산동의 각각 법정동 명칭를 이용하여 명명함	2018. 07.1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산로 236 기초구간에위치하여236을건물번호로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9-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75 번길	22- 5	2009. 11.16.	논고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60m지점 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7.1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담방서로23번길 6 기초구간에위치하여6을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9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112번길	174	2018.07.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